임실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올 농가지원예산 2억4100만원 투입, 도내 시군 중 최다

과수·일반 구분 신청, 능형철조망 설치사업 지원

임실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농경지에 침입하여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능형철조망 설치 사업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피해예방사업 농가 지원 예산은 2억4,100만원으로, 이는 도내 시·군중 가장 많은 사업비다.

임실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능형철조망 설치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수농가의 계속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수농가와 일반농가를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과수농가는 연장 300m로 설치비는 보조금 70%(644만원) 자부담 30%(276만원)다. 일반농가는 연장 150m로 설치비 보조금 70%(322만원) 자부담 30%(138만원)으로 추진하면 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 금액은 타·시군보다 높아 농가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 군은 지난 해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통해 99개소 설치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 등 피해 예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접수신청은 농지 경작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3월에 통보하고, 사업 기간은 농작물 수확시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농작물 피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본격 시행

시내권 하정2길, 마방길, 시청남로

남원시가 낙후된 보행환경을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원시 2022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78건으로 전년도 대비 13건(4.4%) 감소했고, 부상자수는 3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보행자 우선도로' 특교세 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된 국비 4억 5천만원을 투입, 시내권 하정2길, 마방길, 시청남로 3개 노선 1.2㎞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 12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 현재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중지 중으로 3월 초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됨에 따라 본 사업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통약자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하정2길 등 3개노선을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만들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걷고 싶은 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폐기물 실적 보고 지도·점검 실시

임실군이 2023년 폐기물 실적 보고 제출과 관련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게 사전 안내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실적 보고 제출 대상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2023년 실적보고서를 2월 말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실적 보고 제출 대상자는 사업장 폐기물(건설, 의료, 지정 포함) 배출자 및 처리업자(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등),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올해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파워블로거, 관광전문가, 여행사 대표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한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순창군, 관광 마케팅 본격 시동

올해 300만 관광객 목표, 파워블로거 취재단 운영 등 SNS 홍보 강화

순창군이 '가고 싶은 순창, 머물고 싶은 순창'을 비전으로 삼아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군은 올해 순창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적인 매력을 최대한 살려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홍보활동을 통해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이에 군은 침체되어 있는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방송매체 홍보,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관광체험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군은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청정 순창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국에 순창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릴 예정이며, 파워블로거 취재단 운영과 인스타 인플루언서 카드뉴스 제작 등 SNS 홍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파워블로거, 관광전문가, 여행사 대표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고 각종 축제장, 관광협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외부에 직접 찾아가는 관광 마케팅도 선보일 예정이며, 성수기철에는 강천산, 발효테마파크 등 순창 주요 관광지 현장을 찾아가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관광 홍보 마케팅도 계획하고 있다.

군은 올해 다채로운 콘텐츠와 강력한 홍보 전략, 체계적인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순창'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통해 순창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관광시책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지속적으로 순창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남원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가 의무화되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인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등한 위치의 계약 협상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전·월세 사기 등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인 주거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며,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뿐 아니라 비주택(공장, 상가 등), 무허가건물도 주거목적이라면 신고대상이 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체결일(또는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 또는 위임자(공인중개사 등)가 30일 이내에 건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 처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063-620-614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농기센터, 미꾸리 인공 부화 치어 분양 신청접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분양을 원하는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접수가 가능하며 치어는 센터 미꾸리 연구센터에서 생산된 치어로 60일 이상 키운 0.3g 이상의 치어를 분양할 예정이며, 공급가격은 마리당 5원이며 남원 관내에서 미꾸리를 양식하기 위한 양식 시설을 갖춘 어가에 한정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사업용 화물자동차 상습적 밤샘 주차 단속 실시

순창군은 13일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통행 방해, 보행자 및 차량의 교통사고 유발 등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최근 준공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구 순창IC)'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만큼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2월 중에는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후 3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다.

군은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가 자행되고 있는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지역을 피해 주차하는 지역도 예외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화물자동차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